

## 지역기술혁신센터(TIC) 부지 지원(안)

|            |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|
| 의 안<br>번 호 | 2002-43 |
|------------|---------|

제출년월일 : 2002.. 7

제 출 자 : 김제시장

### 1. 제안이유

- 지역기술혁신센터(TIC) 건축을 1차년도 사업기간내(2001.7. ~2002.6.30)  
완공하여야하나 부지미확보로 착공불가 및 사업무산 위기
- 대학과 협력기업의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으로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 
제품.기술개발로 농기계관련 분야 기업유치 및 국제경쟁력 제고키  
위해 부지 제공

### 2. 주요골자

#### 가. 지역기술혁신센터(TIC) 신축부지 김제시 지원

- 위 치 : 순동산업단지내 8BL
- 면 적 : 1,200 평
- 소요예산 : 214백만원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5, 동법시행령 제6조

# 지역기술혁신센터(TIC) 부지 지원(안)

## □ 사업목적

- 지역별 전략 특화산업과 대학의 비교우위 분야를 연계하여 지역산업의 기술혁신과 신기술 창업을 지원(Technology Innovation Center)

## □ TIC 주요기능

- 공동연구 : 산·학·연 공동연구 수행 및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지원
- 교육훈련 : 산업체 인력의 재교육 및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우수 기술의 인력 배출
- 정보유�� : 국내외 첨단기술 동향과 기술정보를 산업체에 제공
- 창업지원 : 신기술 창업자에 대한 공간, 기술, 경영지도 등 지원
- 장비이용 : 기업이 공동활용 할 수 있는 고가 실험, 측정장비의 구축

## □ 지역기술혁신센터 설립 개요

- 사업명 : 전주대학교농기계부품개발및생산지역기술혁신센타
- 참여기관 : 산업자원부, 전라북도, 김제시
- 사업기간 : 2001년 7월 1일 ~ 2006년 6월 30일 (5년간)
- 참여업체 : 국제농기계외 60여개 업체
- 기술혁신센터 규모
  - 설립예정지 : 순동산업단지내 8BL
  - 부지 : 1,200평 (평당 178천원 × 1,200평 = 214백만원)
  - 연건평 : 500평 (평당 100만원 × 500평 = 5억)
    - 1층 - 300평 (가공실, 측정실, 행정실, 평가실등)
    - 2층 - 200평 (세미나실, 연구실, CAD/CAM실등)

## □ 문 제 점

- 김제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순동산업단지내 부지를 무상임대키 위해 중진공과 수차에 걸쳐 협의하였으나 무산되어
- TIC 건축을 1차년도 사업기간내(2001. 7. 1 ~ 2002. 6. 30) 완공하여야 하나 부지 미확보로 착공 불가
- 금년부터 추진하는 신규 기계부품전문 농공단지 입주희망업체와 지역기술혁신센터(TIC) 연계한 유망 중소기업 유치 어려움으로 지역발전 시너지 기대효과 지난

## □ 대 책

- 원활한 지역기술혁신센터(TIC) 추진을 위해 신축부지 김제시 지원

## □ 지역기술센터(TIC) 신축부지(안)

- 위 치 : 순동산업단지내 8BL
- 면 적 : 1,200평
- 소요예산 : 214백만원

## □ 기대효과

- 농기계관련 산업 집중 육성으로 유망 기업 유치
- 대학과 협력기업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으로 정보유통과 창업보육

## 【 참고자료 】

### ○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제14조의4 (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설립등)

- ① 기술기반조성사업등에 대한 평가·관리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원(이하 "평가원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
-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
- ③ 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
- ④ 평가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

1. 기술기반조성사업 및 기술담보사업에 대한 평가·관리
2. 공업발전법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,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의 지원 및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평가·관리
3.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산업 및 에너지분야의 기술지원사업에 대한 종합분석·평가
4. 시험·평가기술의 개발 및 지원
5. 기술교육
6.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

### ○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제14조의5 (출연)

- ① 정부는 평가원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.
-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의4제4항 각호의 사업을 평가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○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  
(기술기반조성사업에의 출연등)

- ① 기술기반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법인은 사업주관기관이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(현물을 포함한다)를 출연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기반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법인이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은 그 출연을 하는 기관 또는 법인과 출연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수 신 : 김제시의회의장

제 목 : 김제시건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

위 안건을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 
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.

붙 임 : 김제시건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

발의자 : 오인근 의원외 7인

(발의자 서명 붙임)